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 주요내용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
심사대상	내국법인 등이 지출 또는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기한	법인세 신고 전에 신청 가능, 누락분은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신고 전에 신청
제출서류	① 사전심사신청서 ② 연구개발비명세서 ③ 연구개발보고서 ④ 급여대장, 연구노트 등

※ 신청서식 및 작성 참고자료는 국세청 누리집(nts.go.kr) → 국세신고 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혜택

- 심사내용에 대한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
-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단, 부정확한 서류제출, 사실관계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 있는 경우 제외
- R&D 세액공제에 대한 컨설팅 등 **자문 서비스 제공**
-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와 납세협력비용 절감

◆ 심사절차

심사담당	① 중소기업은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② 재심사, 중견·일반기업은 국세청
심사절차	심사는 기술심사와 비용심사로 구분 - 기술심사 :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 개발의 요건에 적합여부 검토 - 비용심사 : 지출한 비용이 공제 적용 대상 비용인지 검토
심사방법	서면심사 원칙,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가능
보안유지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해 접근권한을 심사 담당자로 제한, 엄격한 내부통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혜택 안내

◆ 혁신성장기업이란?

고용중대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기술력이 높은 혁신주도형 신성장기업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4차 산업 선도기업

◆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혜택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스타트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설립 후 5년 미만인 중소기업
- 혁신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혁신성 평가를 통과·인증된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중소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급여·복지혜택 등이 우수하여 청년이 선호할 수 있는 중소기업
- 일자리 창출기업** 고용인원을 일정비율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 부담환급협약이 없는 경우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 지급

신속한 경정청구

- 경정청구서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 검토하여 신속하게 환급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최대 9개월 범위 내 기한연장 가능
- 납세 담보 1억원 한도 내에서 면제 가능



전국 어디서나 126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을 한번에!

2022 www.nts.go.kr
National Tax Service

법인세 신고안내



대전지방국세청
NTS Daejeon Regional Office

2022년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맞춤형 절세 팁

◆ 온라인 도움자료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안내 동영상 및 주요 세법개정 내용 게시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신고시 유의사항

* QR코드 스캔시 바로가기 가능

◆ 신고·납부기한

각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정기신고

◆ 편리한 세금납부

- **다양한 납부방식**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카드 가능
- **국세기좌** 전자납부번호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 **신용카드** 홈택스·인터넷지로 / 은행 CD·ATM기

◆ 분납안내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
-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 운영시간 제한 및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 : ①손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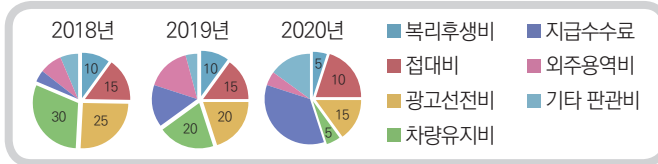
◆ 바로제공서비스

홈택스 로그인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바로가기

* 기장대리인 및 외부조정 세무대리인 열람 가능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 업종별 분석, 신고참고자료, 유의사항, 절세 TIP 등
- 공제감면 등 참고 위한 **원천세 신고자료** 제공
- 주요 판관비 비중 안내 3개 사업연도 자료 **원그래프** 제공



◆ 모바일안내 서비스

모바일을 통해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고도움자료 및 주요 공제·감면 제도 안내

문자수신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

안내 개요

소상공인 임차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공제기간 : '20.1.1.~'22.12.31.까지

감면 대상

- 임대인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여 준 부동산임대사업자(법인포함)
- 임차인 요건 : '21.6.30.이전부터 영업목적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①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 갱신계약서 포함)
- ②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 ③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

안내 개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1인당 연간 일정금액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400~1,200만원) 공제

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주점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

사후관리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상시근로자(청년 등)가 감소한 경우 공제세액 상당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 '20사업연도 상시근로자 감소하여 사후관리 면제받은 법인이 '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상시근로자(청년 등)감소한 경우 법인세 추가 납부